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'21.9.13.(월) 조간	배포	'21.9.10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담 당 자	신 용 진 사무관 (02-2100-2644)
	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장 이 명 근(051-519-1558)		윤 관 식 부장 (02-3774-3300)
	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본부장 금 종 익(051-519-1476)		권 의 진 부장 (051-519-1434)
	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부문대표 이 창 화(02-2003-9013)		진 양 규 부장 (02-2003-9100)

제 목 :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.

1. 추진배경

☐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('19년)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.

○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*하고 있습니다.

* '21.6월말 누적거래현황 : 신금투(14만명, 2.7억달러), 한투(51만명, 7.5억달러)

○ 다만,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·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.

☐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,

-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,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**별도 인프라를 구축**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**제도화함**으로써
- 투자자들이 **국내 및 해외주식**을 소수단위로 보다 **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***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

* (예) 투자자분의 소수단위 주식을 증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 등

2. 주요내용

- **해외주식**은,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**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***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.

* 투자자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(자본시장법 §311①)

-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“**소수단위 전용계좌**”에 **별도로 기재하여 관리***합니다.

*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

-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**소수단위로 매매**하고, **배당금을 수취**할 수 있습니다.

- **국내주식**은, **신탁제도(수익증권발행신탁)**를 **활용**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**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**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.

-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.

-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,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**수익증권 취득**합니다.

- 투자자는 **수익증권 보유자**로서 주식의 **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**를 향유하되, 소수지분의 **의결권**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**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**합니다.

※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,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

3. 향후계획

□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*이 필요하지만,

- * (예) ❶ 예탁결제원의 신탁방식 예탁에 대한 신탁업 규제특례 부여(法 §11, §12 등)
- ❷ 비금전(주식)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(法 §110)
- ❸ 주식거래시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인정(法 §309, 승 §184 등)

○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,

- 우선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,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,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*,

- *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, S&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, 코스피200의 경우 약 3천만원이 필요하나, 0.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,000달러, 30만원으로 가능

-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➡ [참고1, 2] 참조

□ 올해 10~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,

○ 세부 제도설계,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

- 해외주식은 올해 중, 국내주식은 내년 3/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
※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[별첨]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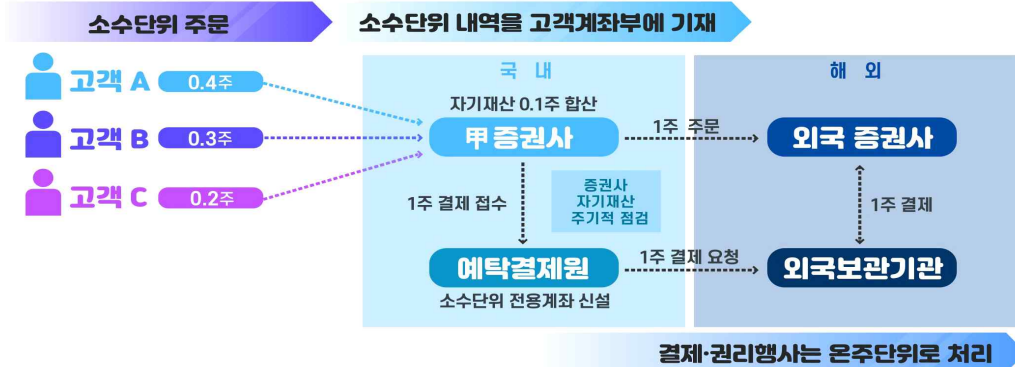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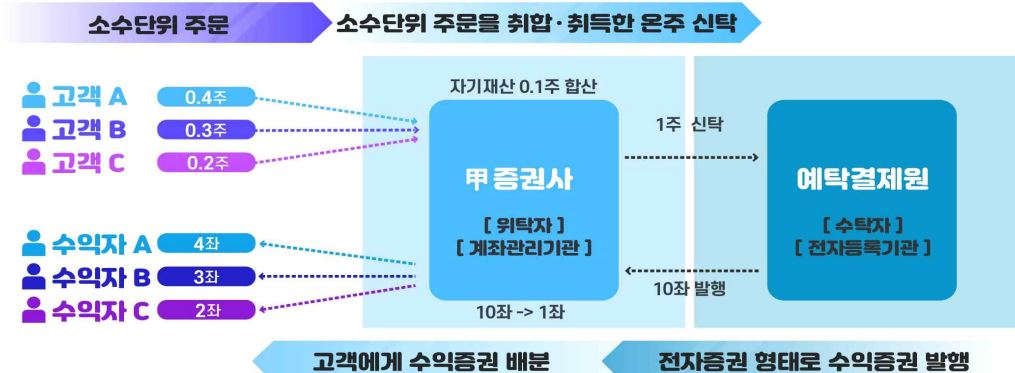
해외 주식

-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를 만들어 해외에 주문



국내 주식

- 온주를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배분



기대 효과

고가 주식에 대한
주식투자 접근성 확대



소규모 투자금으로
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



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
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



① 주(株) 단위가 아닌 '금액 단위'로 주식투자 가능

- ▶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듯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됨
(기업은 안정적 자금조달, 투자자는 배당소득 등 투자이익 극대화 가능)
- ▶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들이 여유자금, 용돈, 세뱃돈 등으로도 금액에 맞게 투자 가능

② 소액투자자들에게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

- ▶ 아마존 등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웠던 소액 투자자도 투자 가능

※ 주요 고가 우량주 현재주가('21.9.8 기준)

(해외) 아마존 \$3,525.50 / 알파벳 \$2,873.82 / 테슬라 \$753.87 등

(국내) LG생활건강 1,408,000원 / 삼성바이오로직스 931,000원 등

③ 금융투자에 대한 조기 학습기회로 활용 가능

- ▶ 투자경험이 없는 초기 투자자도 작은 금액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금융투자 습관을 학습 가능

④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

- ▶ 투자자들이 금액단위로 지정하는 포트폴리오에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 제고

※ (예시) 투자자가 주식투자 상한(예:1천만원)을 설정하고 매달 50만원씩 美 기술주에 투자하되, 상한 초과시 금액단위로 매도하는 상품 등

- ▶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의 이해가 쉽고, 여분없이 모든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단위 '모델 포트폴리오'를 제공할 수 있게 됨